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1.10.24 (월) 14:0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헌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0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2조)
- 나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(안 제3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